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시중구태평로1가31번지/ 전화(02) 731-6556 /전송(02)731-6562

처리부서 : 법무담당관(시청본관 3층) / 담당 : 김현주

문서번호 법무 11010- 221

시행일자 1998. 2. 4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담당관		
법제제장		
기안	김현주	
		협조

제목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폐지지침 등 2건 발령

1.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폐지지침 등 2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가. 발령예정일 : '98. 1. 27(토)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에규 제641 ~642호

에규제 641
- 642 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1부.끝.

서울특별시장

(제2안)

수신 : 공보담당관

제목 : 에규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폐지지침 등 2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8. 1. 21 (토)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예규 제641 ~642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1부.끝.

서울특별시

(제3안)

수신 : 수신처참조

제목 : 예규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주택개발재개발사업업무지침폐지지침동 2건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8. 1. 21 (토)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예규 제641 ~642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1부.끝.



서울특별시

수신처 주택재개발과장, 총무과장

예 규 발 령 목 록

□2건(페이지)

연 번	법 규 명	번 호	주 관 부 서
1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폐지)	제641호	주택재개발과
2	주요시설경비원근무지침 (폐지)	제642호	총 무 과
	“ 이 하 여 백 ”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폐지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8년 / 월 / 일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강 덕



서울특별시주택개발재개발사업업무지침폐지지침안

제출일자	1997. 11. 21	제출처	서울특별시주택개발사업관리부
담당자	김기성	직위	부장
성명	김기성	직책	부장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예규(주택개발재개발사업업무지침)” 폐지 → “규칙”으로 제정

2.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시재개발법·령 및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폐지지침안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02)3707-8231/2 / 전송3707-8249
 처리부서 : 주택재개발과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별관2층) 담당 이 환

문서번호 주재58531- 2/64
 시행일자 1997. 12. 22.

수신 법무담당관

선결	공무상방안		지		
접	일자	97.12.23	시		
수	번호	4487	결	법무담당관 209	
처리과			재		
담당자	김희구		공		
			함		

제목 서울특별시주택개발사업업무지침 폐지 발령 의뢰 (예규)

1.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이 97. 12. 15 서울특별시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기 종전 서울특별시 예규589호 서울특별시 주택개발사업 업무지침을 폐지 발령 의뢰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주택개발사업업무지침 폐지규정안 1부. 끝.

주 택 재 개발 과 발 기 과 동 장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02)3707-8231/2 / 전송3707-8249
 처리부서 : 주택재개발과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별관2층) 담당 이 황

문서번호 주재58531-

시행일자 1997. 12.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서울특별시
보존		
행정 2 부시장	전결	
주택국장		
주택재개발과장		재개발1계장
기안	재개발계획계장	재개발2계장

제목 서울특별시주택개발재개발사업업무지침 폐지 지침안 (00)118



1.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이 '94. 12. 15 서울특별시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외결되었기 종전 서울특별시 예규589호 서울특별시주택개발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을 폐지 코자 합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주택개발재개발사업업무지침폐지규정안 1부. 끝.

(제2안)

수신 법무담당관

제목 서울특별시주택개발재개발사업업무지침 폐지 발령 의뢰

1.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이 '97. 12. 15 서울특별시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 외결되었기 종전 서울특별시 예규589호 서울특별시 주택개발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을 폐지 발령 의뢰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주택개발재개발사업업무지침 폐지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우(02)-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3707-9393 / 전송 02) 3707-9399
 처리부서 : 농수산물통과(서소문빌딩 9층 902호) 담당 : 김 달 호

문서번호 농유 51160- 3098

시행일자 1997. 12. 29 ()

수신 내부결재

취급			시	장
보존				
부 시 장	진결			
지역경제국장	대결			
농수산물통과장			법무담당관	
기안	진명수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9/19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조례제3440호-'97.12.5) 및 농림부 관리51160-756('97.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가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0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97.11.17)되어, '97년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97.12.5 서울특별시조례 제3440호로 공포 되었기에,
 3. 관련 토매시장인 양재동양곡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추무관청인 농림부의 승인을 득한 후, 별첨과 같이 동 업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따로붙임 : 1.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조례 제3440호-'97.12.5) 1부.
 3. 농림부 공문(관리51160-756호) 1부. 끝.

(제2안)

수신 : 법무담당관

제목 : 해규(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 발령 의뢰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을 별첨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로붙임 : 1. 방첩서 사본 1부.
 2.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부. 끝.

농 수 산 유통 과 장

서울특별시예규 제 3호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폐지지침안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시장